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선	기관의 장
람	

제 659호
2008년 10월 6일 월요일

차 례

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-42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고시 2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-813호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공고 4
-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-814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
일부개정조례(안)입법예고 5
-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-826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
공시송달 공고 12

회							
람							

발행 : 인천광역시서구

편집 : 기획홍보실

고 시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 - 42호

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고시

주택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08년 9월 26일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- 1. 사 업 명 : 민영아파트 건립공사
- 2. 사업주체 : 현대주택건설 대표 김종호 외 10인
- 3.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
 - 가. 위 치 : 서구 검단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46블럭 2, 4롯트
 - 나. 대지면적 : 4,488.20㎡
 - 다. 연 면 적 : 10,707.5454㎡
 - 라. 사 업 비 : 23,930,999,000원
 - 마. 사업규모 : 지하1층 지상10층 1개동 79세대
- 4. 사업기간 : 2007.10 ~ 2009.10
- 5.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
“ 변경사항 없음 ”
- 6. 변경사항
 - 가. 건축면적 감소 2,2151㎡
 - 나. 부대시설 : 조경면적 증가 601.12㎡, 주차장위치변경, 입면변경
 - 다. 단위세대 : 발코니면적, 계단위치, 칸막이변경

[붙임]

사업계획변경 승인내역

구분	인천 검단1지구 이지2차 미래지향아파트 1단지		
사업주체	현대주택건설 대표 김종호 외 10인		
위치	서구 검단1지구 46블럭 2, 4롯데		
규모	지하1층 지상10층 1개동 79세대		
사업규모	용도지역	제2종 일반주거지역	
	대지면적	4,488.20㎡	
	연면적	10,707.5454㎡	
	건폐율	29.77%(법정 30% 이하)	
	용적율	199.15%(법정 200% 이하)	
	조경면적	1,361.59㎡(30.34%)	
형별	구분	112.9532㎡ A형 63세대 112.9532㎡ B형 7세대 112.9304㎡ C형 9세대	
	계	79세대	
주요복리시설	구분	법정	설치
	어린이 놀이터	234㎡ 이상	인근 어린이 공원 직접 출입 사용
	주차장	82대 이상	83대
	노인정	해당없음	-
	근린생활 시설	474.0㎡ 이하	472.42㎡
사업기간	2007.10 ~ 2009.10		
변경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축면적 감소 2,2151㎡ ○ 부대시설 : 조경면적 증가 601.12㎡, 주차장위치변경, 입면변경 ○ 단위세대 : 발코니면적, 계단위치, 칸막이변경 		

공 고

인천광역시서구청공고 제2008 - 813호

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공고

건축신고(신축) 처리된 아래 대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동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지정 사항을 공고 합니다.

2008. 9. 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가. 도로지정 근거

- 건축법 제45조(도로의 지정·폐지 또는 변경)
- 건축법시행규칙 제26조의3(도로대장 등)

나. 도로지정 내역

건축허가 위치	건축주	도로지정 현황		
		도로위치	도로지정 및 규모	비고
인천서구 금곡동 372-5번지	양만석	금곡동 372-5번지 도시계획도로 포함 부분	도로너비:1.5m 도로길이:24.8m 도로면적: 36.0㎡	

다. 공고 방법 : 구보게재, 구홈페이지 게시, 관할 동사무소 게시

라. 도면 열람 : 서구청 검단출장소 건축팀(☎ 032-560-3232)에 비치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- 814호

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8년 9월 30일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1. 조 례 명 :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

2. 개정사유

-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,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
-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
-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 도모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지방공무원법 제51조(친절·공정의 의무)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5조(친절·공정)에 제3항 신설

4. 의견제출

- 이 개정조례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08.10.20.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【참조 : 총무과장, 우편번호 404-701, 주소 :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(심곡동 244번지) Fax:(032)560-4099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기타사항 등

- 개정조례(안)에 대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총무과 총무팀【☎ 032)560-4095】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

자 치 법 규 명	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개 정 사 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,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○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○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 도모
주 요 내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공무원법 제51조(친절·공정의 의무)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 5조(친절·공정)에 제3항 신설
개 정 안	“ 별 지 참 조 ”
산구조문대비표	“ 별 지 참 조 ”
관계법령 발체	“ 별 지 참 조 ”
관련사업 계획	“ 해 당 없 음 ”
예산수반사항	“ 해 당 없 음 ”
기타 참고사항	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(표준안) 일부개정안”

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친절·공정하고”를 “친절하고”로 한다.

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재외공무원복무규정(대통령령)”을 「재외공무원복무규정」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공무원증규칙(총리령)”을 「공무원증규칙」으로 한다.

제23조제6항 중 “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”을 「한국방송대학교 설치령」으로 한다.

《인용법령 띄어쓰기와 낫표(「)표기》

제18조제2항 중 “공무원연금법”을 “「공무원연금법」”으로 하고, 제22조제1호 중 “병역법”을 “「병역법」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”을 “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”을 “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」”으로 하며, 제23조제7항제1호 중 “상훈법”을 “「상훈법」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정부 표창 규정”을 “「정부표창규정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친절·공정) ①공무원은 공과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<u>친절·공정하고</u> 신속·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설〉</p>	<p>제5조(친절·공정)①----- ----- -----<u>친절하고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10조(파견근무) 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국외의 정부기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<u>재외공무원복무규정(대통령령)</u>을 준용 한다. 이 경우 구청장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.</p>	<p>제10조(파견근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---- ----- -----<u>「재외공무원복무규정」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2조(복장 등) ① (생략)</p> <p>②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<u>공무원증규칙(총리령)</u>을 준용한다.</p>	<p>제12조(복장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<u>「공무원증규칙」</u>----- -----.</p>

【지방공무원법】

제51조 (친절·공정의 의무)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한다.

지방공무원 복무조례(표준안) 일부개정안

지방공무원 복무조례(표준안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5조(친절·공정)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,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, 친절하고 신속·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-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 2008 - 826 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[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]

- 1. 자동차관리법 제10조, 제29조 및 제34조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주소불명, 수취인 미거주, 수취인 부재, 이사감 및 장기간 방치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,
- 2.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2008년 10월 2일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□ 공고기간 : 2008. 10. 2 ~ 2008. 10. 17 (15일간)

□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

1. 예정된 처분의 제목	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			
2. 당사자	성 명 (차량번호)	김종복외 1인 (“불임” 위반차량내역 참조)		
	주 소			
3. 처분의 원인된 사실	(“불임” 참조)			
4. 처분하고자하는내용	과태료 부과 및 점검·정비·원상복구 명령			
5. 법 적 근 거	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제37조			
6. 의 견 제 출	기관명	인천광역시 서구청	담당부서명	교통민원과
	주 소	인천시 서구 서곶길 323(삼곡동 244) (☎ 560-4872, FAX 560-4869)		
	기 한	2008년 10월 17일까지		

※ 의견제출시 유의사항

-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, 컴퓨터통신, FAX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,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컴퓨터통신(yut2000@korea.kr)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, 의견을 제출한 후에도 의견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.
-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

□ 위반차량내역

연번	당 사 자		위 반 사 항			비 고
	성 명	주소(사용본거지)	차량번호	위반내용	위반법규	
1	김종복	인천시 서구 신현동 112-49 (35/2)	인천80나 7093	뒤번호판 봉인탈락	제10조제3항	
2	문점순	인천시 서구 불로동 607호	경기83다1752	차대번호훼손	제23조제1항	